



『캠퍼스형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』
추진 및 업무연계를 위한
상호협력협약서



제5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은 협력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어느 일방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협력 기관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11월 07일

대구대학교 글로벌브릿지
연구소장 이 미 순

이 미 순

선화여자고등학교
교장 김 무 상

김 무 상

성남여자고등학교
교장 이 윤 철

이 윤 철



『캠퍼스형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』
추진 및 업무연계를 위한
상호협력협약서



대구대학교 글로벌브릿지 연구소, 선화여자고등학교, 성남여자고등학교는 지역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는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『캠퍼스형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』 운영을 통해 고교교육 기여 및 기관 간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력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『캠퍼스형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』 운영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 협력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인적·물적으로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대구대학교 글로벌브릿지 연구소는 지역 인재의 발굴 및 육성 주체로서, 『캠퍼스형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』의 총체적 운영기획, 교육활동, 그리고 기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한다.
- 나. 영천고등학교와 문명고등학교는 『캠퍼스형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』의 주관 학교로서, 공학일반(3학점)과 프로그래밍(2학점)을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성 및 개설하여 공동교육과정의 운영기획, 교육활동 및 기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한다.
- 다. 기존 협약 기관(영천고등학교, 문명고등학교, 무학고등학교, 영동고등학교, 영천여자고등학교)외 선화여자고등학교와 성남여자고등학교는 학생, 교사, 학부모를 대상으로 『캠퍼스형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』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상호 협력한다.
- 라. 기타 “협력 기관”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상호 협력한다.

제4조(협약의 이행) 협력 기관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3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을 변경 혹은 해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 기관은 합의에 의해 서면으로 변경 또는 해지한다.